

## 학교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서울중앙지방법원
사건번호	2018가소○○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구상금
원고	주식회사 ●●●●●●보험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8. 8. 31. 원고패소	비고	
사건개요	<p>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■■■(이하 '이 사건 피보험자'이라 함)은 2017.06.09. 12:00경 ◎◎초등학교 체육실에서 소외 □□□(이하 '피해자'라 함) '좀비서바이벌'놀이를 함. 슬래인 소외 □□□(피해자)을 피해서 학생들은 홀라후프 부근으로 도망을 쳤고, 소외 □□□(피해자)은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기어가고 있던 과정에 평균대 부근에서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던 소외 ■■■(피보험자)과 소외 □□□((피해자)이 충돌하였음 이 사건으로 소외 □□□((피해자)은 소외 ■■■(피보험자)의 무릎에 후두부를 부딪친 후 체육실 바닥에 안면부를 충격하여 치아 상악 좌우측 중절치 파절의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음 원고는 이 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2013.10.23. 이 사건 사고의 피해학생 측에 금5,005,005원을 지급하고, 상법 제682조에 의거하여 보험자대위규정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음. 이 사고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, 학생 보호·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학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함.</p>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</li> <li>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li> </ol>		
청구취지	<p>원고에게 5,00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3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/p>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.</li> <li>-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학교 측에 보호·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건임.</li> </ul>		